

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0. 20.) 상정
-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0. 20.)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산지원과장 이 도 극)

가. 제안이유

- 자연학습장의 사회교육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, 특별전시회, 공연 등에 대한 특별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기존의 관람료 외에 교육프로그램, 특별전시회, 공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및 특별 전시회·공연관람자로부터 특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, 특별 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신설함.(안 제12조 제2항 신설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.	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3호
의결 년월일	2008. 10. 24. (제147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7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자연학습장의 사회교육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, 특별전시회, 공연 등에 대한 특별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기존의 관람료 외에 교육프로그램, 특별전시회, 공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및 특별 전시회·공연관람자로부터 특별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, 특별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신설함.(안 제12조 제2항 신설)

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설치운영”을 “설치·운영”으로 하고, “이용 편의제공”을 “이용 편의 제공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381번지로 한다”를 “381번지에 둔다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용어정의)”를 “(정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설치 운영”을 “설치·운영”으로 하고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”를 “용어의 뜻은 다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자연학습장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자연학습장”이란”으로 하며, “교육의 서비스”를 “교육에 대한 서비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시설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시설”이란”으로 하며, “장비등”을 “장비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1. 정기휴관일: 1월 1일, 추석날, 설날, 매주 월요일(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말한다)

제7조 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관련분야”를 “관련 분야”로 하며, “식견을 가진 자중”을 “식견을 가진 자 중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요하는 질병, 기타”를 “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근무함이”를 “근무하는 것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자원봉사 요원”을 “자원봉사요원”으로 하고, “있으며”를

“있다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의하여 민간 위탁”을 “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에 위탁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관람료) ① 시설의 유지, 관리, 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관람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프로그램, 특별전시회, 공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및 특별전시회·공연관람자로부터 특별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 중 “기 납부”를 “이미 납부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관람료의 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2. 국군의 날에는 군인, 경찰의 날에는 경찰, 어린이날에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
3. 시장이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와 교육이수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
4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그 밖에 관람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

제15조제1항 중 “받은자”를 “받은 자”로 하고, “설치한”을 “설치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”를 “신청을 접수한 순위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 단서에서 “특별한 시설”이란 기존 시설 외에 목적 달성을

위하여 설치하는 조명·음향·무대 그 밖의 시설 등 특수한 설비 또는 시설을 말한다.

제16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조·제22조·제23조·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17조·제18조·제19조·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, 제17조(중전의 제19조)제1항제1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·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·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제2호(중전의 제3호) 및 제4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8조(중전의 제22조)제2항 중 “원상회복은”을 “원상복구는”으로 하고, “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”를 “이를 이행하지”로 하며, “사용자로부터”를 “사용자로부터”로 하고, 후단 중 “철거일로부터 5일이내”를 “철거한 날부터 5일 이내”로 한다.

제19조(중전의 제23조)제1항 중 “시설의 사용기간중 장내의 설비 기타 시설을”를 “시설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사용자는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의 원인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제21조(중전의 제25조)의 제목 “(규칙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자연 학습장 (이하 “자연학습장” 이라 한다)의 <u>설치운영과 관리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연학습 및 <u>이용 편의</u>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설치 · 운영</u>----- ----- -----<u>이용 편의</u> 제공----- -----.</p>
<p>제2조(위치) 자연학습장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<u>381번지</u>로 한다.</p>	<p>제2조(위치) ----- -----<u>381번지</u>에 둔다.</p>
<p>제3조(적용범위) 자연학습장의 <u>설치운영과 관리</u>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<u>의한다</u>.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<u>설치 · 운영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따른다</u>.</p>
<p>제4조(<u>용어정의</u>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<u>용어의 정의</u>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<u>“자연학습장” 이라 함</u>은 시민들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체험의 장이며, 시민의 건강 · 휴양 ·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문화와 <u>교육의 서비스</u>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.</p>	<p>제4조(<u>정의</u>) ----- -----<u>용어의 뜻은 다음과</u>----- ----- 1. <u>“자연학습장” 이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교육에 대한 서비스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2. “시설”이라 함은 자연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기반 및 부대시설·장비등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시설) 시장은 자연학습장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기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자연학습을 위한 기반 및 부대시설·장비 등</p> <p>제6조(휴관일) (생략)</p> <p>1. 정기휴관일 : 1월1일, 추석날, 설날, 매주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)</p> <p>2. (생략)</p> <p>가.~다. (생략)</p> <p>라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</p> <p>제7조(명예관장) ①자연학습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관장 1인을 둘 수 있으며, 관련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2. “시설”이란----- -----장비 등-----.</p> <p>제5조(시설) ----- 다음 각 호----- 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그 밖에----- -----</p> <p>제6조(휴관일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정기휴관일: 1월 1일, 추석날, 설날, 매주 월요일(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말한다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~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그 밖에----- -----</p> <p>제7조(명예관장) ① ----- -----1명----- 관련 분야----- ---식견을 가진 자 중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해임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장기치료를 <u>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</u></p> <p>3.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<u>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</u></p> <p>4. <u>기타 사업목적 수행이 종료되었을 때</u></p>	<p>제9조(해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필요로 하는 질병 그 <u>밖에</u>-----</p> <p>3. -----</p> <p>4. <u>그 밖에</u>-----</p>
<p>제10조(자원봉사요원) 시장은 자연 학습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<u>자원봉사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자원봉사요원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자원봉사요원</u>-----<u>있다.</u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11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자연 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<u>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</u>」에 의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운영의 위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「<u>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</u>」에 따라 민간에 위탁-----.</p>
<p>제12조(관람료) 시설물의 유지, 관리, 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.</p>	<p>제12조(관람료) ① 시설의 유지, 관리, 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관람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프로그램, 특별전시회, 공연 등의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관람거절이나 퇴장의 경우에는 <u>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제14조(관람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<u>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에 대하여는 <u>관람료를 면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. 국군의 날에는 군인, 경찰의 날에는 경찰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만 12세이하의 어린이 3. 시장이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와 교육이수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4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</p>	<p><u>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및 특별전시회·공연관람자로부터 특별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특별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13조(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이미 납부</u>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관람료의 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<u>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. 국군의 날에는 군인, 경찰의 날에는 경찰, 어린이날에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3. 시장이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와 교육이수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4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그 밖에 <u>관람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사용허가) ①자연학습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사용허가를 <u>받은자</u>(이하 “사용자” 라 한다)가 특별한 시설을 <u>설치한</u> 경우에도 같다.</p> <p>②자연학습장 시설의 사용은 부천시외 시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<u>신청접수 순위</u>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.</p> <p>③<u>특별한 시설설치라 함은 기존 시설 외에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명, 음향, 무대, 기타시설 등 특수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제15조(사용허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받은 자</u>----- -----<u>설치하는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신청</u>을 접수한 순위에 따라----- -----.</p> <p>③ 제1항 단서에서 “특별한 시설”이란 기존 시설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·음향·무대 그 밖의 시설 등 특수한 설비 또는 시설을 말한다.</p>
<p>제16조(사용제한) (생략)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</p>	<p>제16조(사용제한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</u>에----- -----</p>
<p>제19조(허가의 취소) ① (생략)</p> <p>1. 조례 또는 이에 <u>의한</u>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</p> <p>3. 천재지변 <u>기타</u>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어려울 때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17조(허가의 취소) (중전의 제19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u>따른</u>----- -----</p> <p>2. -----<u>그 밖</u>에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5.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p> <p>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 <p>제22조(원상복구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.</p> <p>제23조(손해 배상) 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중 장내의 설비 기타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.</p> <p>제24조(권리의 양도금지) (생략)</p> <p>제25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4. 그 밖에----- -----</p> <p>② 제1항에 따른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8조(원상복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원상복구는----- -----이를 이행하지----- ----- ----- 사용자로부터----- -----철거한 날부터 5일 이내-----.</p> <p>제19조(손해 배상) ① -----시설을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사용자는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의 원인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.</p> <p>제20조(권리의 양도금지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시행규칙) -----시행에----- ----- -----.</p>